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5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0,546,6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9,288,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949,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9.부터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8. 22. C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redacted]시 D 공장용지 3807.4㎡를 취득하였고, 2015. 9. 18.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5,721.36㎡(이하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1)]

다. 원고는 'B'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하에 2016. 7. 4.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6. 7. 5.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B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70만 주(100%)를 취득하였으며, 2016. 8.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17. 12. 1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위 조항 중 '매각' 부분을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앞서 면제한 취득세 300,546,6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9,288,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949,9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위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면제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이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또는 그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순한 입법오류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 제81조(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관련), 제83조(시정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 등의 경우나, 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또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추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져보지 않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제1호와는 달리 이 사건 추징조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당시에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제276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 추징 사유 및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었는바,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로,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면서 추징 제외 사유로 매각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만 포함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이후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정되었는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 거의 변함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추징규정의 미비점이 보완되었는바,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경우가 추징 사유로 추가되었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 규정이 제5항으로 독립하였으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징의 사유 및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여 온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의 개정연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중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2호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한 추징사유인 '매각'의 의미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물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도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이는 민법이 규정한 '매매'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 후 추징 규정을 배제하는 요건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대체로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563조는 매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매각'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사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이어서,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추징 배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관한 감면(제6조),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1조·12조), 농어촌 주택개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에 대한 감면(제16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제22조) 등과 같이 단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추징 배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추징 배제 규정을 두는 경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2) 등과 같이 감면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매각 등의 처분이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용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 제81조(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관련), 제83조(시정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 등은 이 사건 추징조항이 적용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는 그 감면의 목적이나 대상, 범위 등을 전부 달리 하고 있고, 매각 등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다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또한 그 행위태양을 완전히 달리하여 매각시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평등주의나 평등의 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산업단지 등의 감면세액 추징에 있어서 매각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추징 배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매각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과도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징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결정, 2018. 2. 22. 선고 2016헌바42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조세감면제도는 일종의 정책적 지원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예외적 성격을 가지는 점, 매각은 스스로의 의사로 타에 처분한다는 것이어서 산업단지 등의 감면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점, 가사 원고와 같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주식을 100% 취득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체와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고 원고는 이후 언제든지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등으로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추징조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제7항 단서로 법인전환시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인사업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의 법인전환시 과세상의 혜택을 주고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해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도 이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각의 감면 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 감면의 대상과 범위, 추징 요건을 달리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도 또한 엄연히 감면의 목적과 대상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징조항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기술신용보증에서 20억 원 가량을 투자받으면서 개인 기업에 투자는 곤란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받아 신규 공장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집행하고 만기도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한 것은 원고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원고는 개인사업체인 'B'를 운영할 경우 그가 소유한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에 이 사건 회사로의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으로 인한 직접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 부담도 법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법적·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내부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같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되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유예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다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할 근거가 없게 되는바, 결국 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지방세법은 원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매각하는 경우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2. 29.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면서 추징 규정을 독립된 조항으로 두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호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매각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추징 요건에 해당함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라 매수한 공장용지에 관하여 공동출자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승계하여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한 경우 신설회사로의 공장용지 양도는 당초 공장용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로 하여금 공장용지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면세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기는 하나(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이는 2000. 12. 29.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다.

(나) 원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갑 제5호증)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도와는 그 규정내용을 달리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것이고, 또한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2002. 2. 2. 세정 13407-118)고도 주장하나, 이는 2000. 12. 29. 개정 이후의 사안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전 지방세법에 관한 것이다. 반면, 합병 또는 법인전환의 경우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2016. 8. 23.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 10. 10.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및 감사원의 심사결정(2018. 3. 7. 감심2017-170), 조세심판원의 결정(2017. 3. 16. 조심2016지1276, 2017. 2. 21. 조심2016지1292, 2015. 11. 2. 조심2015지1130)이 다수 존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뒤에도 과세관청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4)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예영

판사 임진수

판사 강태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과세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민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20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끝.